

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[별표 1]

교육훈련의 구분·대상·방법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		대상	방법
1. 기본교육 훈련	가. 신임 교육훈 련	1)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21 조제1항에 따 른 교육훈련	• 법 제13조에 따라 시 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• 법 제13조에 따라 시 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 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	교육훈련기 관에서의 교 육훈련으로 실시. 다만,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 관에서의 교 육훈련에 상 응한다고 경 찰청장이 인 정하는 직장 훈련이나 위 탁교육훈 련으로 실시 할 수 있다.
		2) 「경찰대학 설 치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	「경찰대학의 학사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제1항 및 제17조의2제1 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·편입학한 사람	
		3) 법 제10조제2 항제2호에 따 른 교육훈련	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 시험합격자	
	나. 관리자 기본교육 훈련	경감·경정·총 경으로 승진임 용된 사람(「경 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」 제 24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 진후보자 명부 에 등재된 사람 을 포함한다)이 받는 교육훈련	경감 (경감으로의 승진후보자 를 포함한다)	
			경정 (경정으로의 승진후보자 를 포함한다)	
			총경 (총경으로의 승진후보자 를 포함한다)	
2. 전문교육훈련		담당하고 있거 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훈련	총경 이하	교육훈련기 관에서의 교 육훈련으로 실시. 다만, 교육훈련 목 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			에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.
3. 기타교육훈련	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	모든 계급	
4. 자기개발 학습	경찰공무원이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·연구활동	모든 계급	